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년월일 : 2021.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중복 사항 삭제(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23조, 제31조)
- 나.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변경(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다. 정책고객서비스 사업종료(2018.10.25.)에 따라 관련사항 삭제(안 제2조, 제46조)
- 라. 제정(개정)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따른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안 제24조, 제47조, 제48조)
- 마.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명,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7조, 제3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12.18. ~ 2021. 1. 7. (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 1.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32조를 제33조로 하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한다.

제7조, 제24조, 제31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화전담부서의 소속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민간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전담팀장이 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정보화전담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정보화의 추진**”을 삭제하고, 제15조 앞에 “**제3장 정보화의 추진**”을 삽입한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정보보호·개인영상정보**”를 “**정보보호**”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삭제하고, 제27조 앞에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삽입한다.

제29조(중전의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수급권자 제33조 앞에 “**제5장 정보화 자료 관리**”를 삭제하고, 제34조 앞에 “**제5장 정보화 자료 관리**”를 삽입한다.

제36조 앞에 “**제6장 정보화교육**”을 삭제하고, 제37조 앞에 “**제6장 정보화교육**”을 삽입한다.

제40조(중전의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로 한다.

제41조(중전의 제40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제41조 앞에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삭제하고, 제42조 앞에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삽입한다.

제43조(중전의 제4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제47조로 하고, 제49조를 제48조로 하며,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6조(국민에게 듣겠습니다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듣겠습니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중전의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정책고객서비스 및”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품제공”을 “금품 등 제공”으로, “등의 경품”을 “등”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제목 외 관련 규정을 각각 “제35조제1항”과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금품 등 제공 기준(제47조제2항 관련)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심사 또는 추천	5만원 이하	100만원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국가정보화 기본법</u>」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15. <u>“영상정보처리기기”란</u> <u>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u></p> <p>16. (생략)</p> <p>17. <u>“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PCRM)”란</u> 가입 회원들에게 행정정보 등을 대량메일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 및 정책결정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하여 참고자료로 삼는 서비스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18. “개인영상정보”란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삭 제>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이하 “CCTV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삭 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신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 3. (생략)
4. CCTV 설치장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CCTV의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심의
6. CCTV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7. 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8.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9. 그 외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조정
10. (생략)

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전략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 및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화전담부서의 소속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민간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산정보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또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민간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생략)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관리국
장이 된다.

③ (생략)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신 설>

제12조 (생략)

제13조(보안관리) ①·② (생략)

③ 정보화전담부서장은 정보보
호·개인영상정보 및 정보통합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
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전담팀장이 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4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보화전담부서
의 소속 국장-----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6조(보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보보호 -

센터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4조 ~ 제22조 (생략)

제23조(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업무처리) ① 구청장

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신 설>

제25조 · 제26조 (생략)

제27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

제17조 ~ 제25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6조(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27조 · 제28조 (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

제29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

있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권자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3.·4. (생략)

제28조 ~ 제30조 (생략)

제3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는 방법,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 (생략)

제5장 정보화 자료 관리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수급권자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

3.·4. (현행과 같음)

제30조 ~ 제32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33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삭 제>

<신 설>

제33조 ~ 제35조 (생략)

제6장 정보화교육

<신 설>

제36조 ~ 제38조 (생략)

제39조(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3의 수강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인 및 어업인
3. (생략)
- ② (생략)

제5장 정보화 자료 관리

제34조 ~ 제36조 (현행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6장 정보화교육

제37조 ~ 제39조 (현행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40조(수강료의 징수) ①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① 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자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신설>

제41조 (생략)

제42조(홈페이지 운영) 구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전자우편 서비스
6. · 7. (생략)

제43조 · 제44조 (생략)

제45조(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41조(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① ----- 제37조-----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장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제42조 (현행 제41조와 같음)

제43조(홈페이지 운영)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7. (현행과 같음)

제44조 · 제45조 (현행 제43조 및 제44조와 같음)

<삭제>

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
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
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
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두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
이 정한다.

③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은 별표 5의 마일리
지 부여기준에 의하되, 구청장
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
에 마일리지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삭 제>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구민과 소속 공무원 등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생략)

[별표 1]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관리 유형	부과 대상	소요경비 산출 방법	기준
장소 임대	장소 임대료	○ 시스템실 임대료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면적) × 대부료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 · 대부료 등의 요율(제25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7조) ○ 전용면적 : 2.88㎡ (19㎡ 랙기준)
	전기 사용료	○ 서버 전기 사용료(월) ·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기본요금 ○ 향온형습기 전기사용료(월) ·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사용량 : 계측값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II 요금제 적용) ○ 사용량 : (해당 서버사용량/전체서버사용량) × 시스템실 향온형습기 전체사용량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II 요금제 적용)
자원임대	○ 도입금액 × 요율 × 1.1 × 자원 사용율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 ○ 1.1 : 부가가치세 ○ 자원사용율 : 해당 자원 사용량 / 전체 자원사용량	
네트 워크 사용료	회선 사용료	○ 인터넷 회선 · 인터넷사용료 총금액 × (사용대역폭/총대역폭)	※ 별도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기관 부담
	통신 장비 사용료	○ 통신장비 · 도입금액 × 요율 × 1.1 × (사용 port 수 / 전체 port 수)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

[별표 2]

제48조 (현행 제49조와 같음)

<삭제>

[별표 2]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보화교육의 수강료(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4]

금품제공 기준(제46조제2항 관련)

구분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아이디어 공모 또는 이벤트	심사 또는 추천	3만원 이하	100만원 이내	10회 이내
설문 또는 투표	응답자 중 추천	1만원 이하	50만원 이내	15회 이내
퀴즈 또는 게임	정답자 중 추천	1만원 이하	50만원 이내	5회 이내

[별표 5]

마일리지 부여기준(제47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부여점수	부여방법
가.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 가입자	500점	가입시 1회
나.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다.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물 게시한 자. 이 경우, 게시물은 직접 구성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적용할 것	10점 이상 5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할 것
라. 투표 또는 설문조사 응답	홈페이지 회원	50점	투표 또는 설문조사별 1회

비고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보화교육의 수강료(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4]

금품 등 제공 기준(제47조제2항 관련)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심사 또는 추천	5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전산정보과 최미란 (☎ 3153-8404)